

시설·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구 분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전자 기록물	행정 박물
1. 서고	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 ²	오디오 1만개당 25m ² 비디오 1만개당 45m ²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m ² 영화필름 1천켤당 30m ²	실소요공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하중	고정식	750kgf/m ²			
		이동식	1,000~1,200kgf/m ²			
2. 사무공간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m ² (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 ²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시설·장비	공기조화 설비		향온·향습설비, 환경적응장비(시청각기록물에 한정한다)			
	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 설비		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 장비		폐쇄회로 감시장치			
	탈산·소독 장비		설치			
	복원·시청각 장비		설치			
	매체수록 장비		설치(전자매체, 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4. 보존환경	온도(℃)		20±2℃	필름매체류: 0±2℃ 자기매체류: 15±2℃	20±2℃	
	습도(%)		50±5%	필름매체류: 30±5% 자기매체류: 40±5%	40±5%	50±5%
	공기질		미세먼지(PM-10): 50μg/m ³ 이산화황(SO ₂): 0.05ppm 이하 산화질소(NO _x): 0.05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120μg/m ³ 휘발성유기화합물(VOC): 400 μg/m ³			
	조명		보존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럭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비고

1. 흑백 사진필름, 마이크로필름은 자기매체류의 온·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탈산(脫酸: 산성 제거)·소독 장비, 복원·시청각 장비, 매체수록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및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특수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구 분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전자 기록물	행정 박물
1. 서고	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 ²	오디오 1만개당 25m ² 비디오 1만개당 45m ²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 ² 영화필름 1천칸당 30m ²	실소요공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하중	고정식	750kgf/m ²			
		이동식	1,000~1,200kgf/m ²			
2. 사무공간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m ² (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 ²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시설·장비	공기조화 설비		향온·향습 설비			
	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 설비		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 장비		폐쇄회로 감시장치			
	소독 장비		설치			
	매체수록 장비		설치(전자매체·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4. 보존환경	온도(℃)		20±2℃	필름매체류: 0±2℃ 자기매체류: 15±2℃	20±2℃	20±2℃
	습도(%)		50±5%	필름매체류: 30±5% 자기매체류: 40±5%	40±5%	50±5%
	조명		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럭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비고

1. 흑백 사진필름, 마이크로필름은 자기매체류의 온·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소독 장비, 매체수록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관리대상이 소량일 경우,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저온함 등을 활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4. 서고의 하중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기록물과 서가 중량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및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구 분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1. 서고	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 ²	실소요공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하중	고정식	750kgf/m ²	
		이동식	1,000~1,200kgf/m ²	
2. 사무 공간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m ² (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 ²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시설·장비	공기조화 설비		향온·향습 설비	
	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 설비		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보안 장비		이중 잠금장치 설치	
	매체수록 장비		설치(전자매체·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4. 보존환경	온도(℃)		20±2℃	20±2℃
	습도(%)		50±5%	40±5%
	조명		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럭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비고

1. 매체수록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서고의 하중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기록물과 서가 중량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기록관의 장은 보존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및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